#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심상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68

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심상정·정성호·이용우

김정호・이은주・강은미

배진교 · 장혜영 · 류호정

양경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주택법」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11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11의 제목 중 "노인복지주택"을 "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"로 하고, 같은 조 중 "노인복지주택(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"를 "노인복지주택 및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11( <u>노인복지주택</u> 에 대한	제43조의11(노인복지주택 및 오
특례) 제2조제8호의2·제9조제4	<u>피스텔</u> 에 대한 특례)
항·제43조의2·제43조의4·제43조	
의5·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	
따른 주택은 「노인복지법」	
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	
복지주택 중 분양된 <u>노인복지</u>	
주택(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	<u>노인복지주택 및 「주택</u>
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	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
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	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
제외한다)을 포함한다.	오피스텔을 포함한다. 다만,
	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
	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
	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 및 오
	<u>피스텔은 제외한다</u> .